

현				개					
(별표1)				(별표1)					
소송비용 지급기준				소송비용 지급기준					
구분 소송별		지 급 기 준			구분 소송별		지 급 기 준		
		내 용	착 수 금	승 소 사 례 금			내 용	착 수 금	승 소 사 례 금
민 사 소 송	2. 본안사건· 소송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	200,000원 이내	(생략)	민 사 소 송	2. (헌행과 간음)	330,000원 이내	(헌행과 간음)		

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4
의 결 년 월 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 출 자 : 조례장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사유

-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시정자문위원회 제도가 폐지된 지급까지 정리되지 않고 있는 사항을 지방화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3조 제2항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한 잡정 규정 사항을 삭제하는 것임.

☐ 주요골자

-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가로명의 제정·변경 시 잠정적으로 시정자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된 사항을 삭제

☐ 법적근거

- 부천시시정자문위원회조례폐지조례

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가로명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가로명 선정과 고시) 제2항 중 “시 지방의회” 다음에 “(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)”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
제3조(가로명선정과 고시) ①(생략)	제3조(가로명선정과 고시) ①(현행과 같음)		
② 시장은 제1항의 가로명을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모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한후 <u>시지방의회(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	②		
			
			
			
			<u>시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</u>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235
의결 년월일	93. 12. 24 (제25회)

제출년월일 : 1993. 12.

제출자 : 조례정비특별위원회

☐ 제안이유

관내 예식장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인한 예식장 제공으로 시민편의를 제공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함.

☐ 주요골자

- 시민편의 제공
-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
-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외수입 증대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천시시민회관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업무)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고 “제6항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시민을 위한 예식장 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